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3건
 - 위임(도지사→소방서장) ⇒ 권한 환원(도지사)
 - ※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개정시행('15.7.1.)
 - ▷ 소방시설업 등록
 - ▷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
 - ▷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
- 근거법령 이관·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3건
 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⇒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
 - 위임(도지사→소방서장) ⇒ 권한 환원(도지사)

※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시행('15.7.1.)

- ▷ 방염처리업 등록
- ▷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
- ▷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던 ‘소방시설업’ 관련 위임사무 3건과 ‘방염처리업’ 관련 위임사무 3건을 도지사에게로 권한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